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

○ 일 부 자구의 수정

○ 적용시한의 명시

나. 주요골자

○ 제2조 중 “취득하여 등기하는”을 “취득 또는 등기하여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여 직접사용하는 재산에만 면제

○ 면제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비영리사업자등이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여 등기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시·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명제대상세목에 추가하였고,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므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이므로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